

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18조 제3항에 의거 본 대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,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본 대학교의 특성에 맞는 입학전형제도의 수립
2. 입학전형(편입학 포함)의 시기와 절차에 관한 사항
3. 입학전형의 방법과 고사과목선정 및 출제방식에 관한 사항
4. 입학전형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제반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
5. 기타 입학전형에 관하여 총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
6. 입학전형 기본계획 심의, 의결 (신설 2012. 10. 23)

제 3 조 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입학처장, 각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12. 10. 23, 2015. 5. 1)

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된다.(개정 2015. 5. 1)

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 4 조 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자문사항에 대한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 5 조 (사무관장)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팀에서 관장한다.(개정 2015. 5. 1)

제 6 조 (간사)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, 간사는 입학팀장이 된다.(개정 2015. 5. 1)

제 7 조 (소위원회) ① 위원회에 입학전형제도연구위원회, 입학사정위원회, 특기자심사위원회, 입학전형 행정지원 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(개정 2018.11.27)

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사항을 연구, 개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 8 조 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